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55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K

2. L

3.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담당변호사 김도훈)

피고, 피항소인 B재개발조합

변론 종결 2019. 4. 17.

판결 선고 2019. 5. 15.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2415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3/7지분에 관하여, 제1심공동피고 E, F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1980.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7.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26,67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망인은 2012. 10. 17. 사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 그 배우자 D와 자녀들인 E, F(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A은 제1심에서 1999. 12.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들이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사유로 제1심 공동피고들이 자백하였다고 간주한 후 A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후 확정되었다¹⁾).

라. 한편 A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A의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망 A과 원고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이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A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A의 매수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참조).

A이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 서 승소한 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 등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더이상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완성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등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립시인 1980. 7. 10.경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그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A이 이를 매수하여 원고 등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80.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N, O, P, Q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여 오던 중 1999. 12. 31. A에게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이 현재까지 Q에게 재임대하여 사용·수익하여 오던 중 2014. 6. 5. R교회에게 사용대차하여 간접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들이 앞서 본 임차인들과 원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2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

목		록	
서울 동로구			
대 2772.1㎡			
(이상 이전할 지분 2772.1 분의 재개발조합 지분중 5.06)			
위 지 상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10층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1층	320평	5품	6작
2층	374평	1작	
3층	374평	1작	
4층	374평	1작	
5층	374평	1작	
6층	374평	1작	
7층	374평	1작	
8층	374평	1작	
9층	374평	1작	
10층	374평	1작	
옥탑	85평	6품	5작
지하실	2144평		
내			
지하층			
건평	3평	8품	6작

1) 원고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후에도 항소하였으나 2019. 4. 17.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